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항: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변경
- 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 ⑤ 반기 기준으로 갱신

□ 효력발생일: 2023. 3. 3.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경과하였음에도 <u>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u> 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반기 기준으로 갱신	-	2022. 9. 5. 기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2. 28. 기준	2023. 1. 31. 기준
투자자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



트러스톤자산운용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7 시 이전(경과 후) : 제 2(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 시 이전(경과 후) : 2(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7 시 이전(경과 후) : 제 3(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4)영업일에 지급	17 시 이전(경과 후) : 3(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4)영업일에 지급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2. 28. 기준	2023. 1.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2. 28. 기준	2023. 1.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 년 경과 내역 삭제	주식 책임운용인력 최영철 (2016.01.20~2018.03.22)) 주식 부책임운용인력 이무광 (2016.01.20~2018.03.22)) 주식 부책임운용인력 유진형 (2018.03.23~2018.05.20)) 주식 부책임운용인력 김내혁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2018.05.21~2020.01.08)</u> <u>)</u> <u>채권 책임운용인력 문성호</u> <u>(2014.09.25~2020.01.08)</u> <u>)</u> <u>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전춘봉</u> <u>(2017.09.25~2018.02.28)</u> <u>)</u> <u>채권 부책임운용인력 진재식</u> <u>(2017.09.25~2020.01.08)</u> <u>)</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 자산유동화증권 :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가) (생 략)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생 략) 다) (생 략)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3) 자산유동화증권 : <u><삭 제></u>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u>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u>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동일종목투자 :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u> <u>다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 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생략) (나) (생략)	<u><삭 제></u> <u><삭 제></u>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 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기재 보완	<신 설>	<u>증권대여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생략) 설정한 후 1 년이 되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현행과 같음) 설정한 후 1

다. 기타 투자위험		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생 략)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u>)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현행과 같음)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오후 5 시] 이전(경과 후) : 제 2(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오후 5 시] 이전(경과 후) : <u>2(3)영업일</u>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7 시[오후 5 시] 이전(경과 후) : 제 3(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7 시[오후 5 시] 이전(경과 후) : <u>3(4)영업일</u>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4)영업일</u> 에 환매금액 지급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대차대조표</u>	<u>재무상태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3.6 ~ 2022.3.5] <신 설>	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u>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632,543원입니다.</u> [직전 회계연도 : 2021.3.6 ~ 2022.3.5] <u>*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u> <u>주6)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2021.3.6 ~ 2022.3.5)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u>
--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9. 5.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9. 5.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9. 5.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2. 28. 기준</u>	<u>2023. 1. 31.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 23 기(2020.12.31)</u> <u>제 22 기(2019.12.31)</u>	<u>제 24 기(2021.12.31)</u> <u>제 23 기(2020.12.31)</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2. 28. 기준</u>	<u>2023. 1. 31. 기준</u>

3.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주요업무 (생략)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 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 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1) 주요업무 (현행과 같음)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 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 정성 여부, <u>투자신탁재산 명 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 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 이 일치하는지 여부</u> 등의 확 인업무
---------------------------------	---------------------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제 5 영업일</u>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5 영업일</u>
2.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합니다. ① ~ ② (생략)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 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합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 년(<u>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u>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이후 2 년</u>)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2) ~ (3) (생략)	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생략)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 ⑦ (생략)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 년(<u>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u>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u>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생략)	<u>예는 설정 이후 2 년</u>)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현행과 같음)
--	--	--	---